

의안번호	제 31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의영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4년 9월 5일

#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의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1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14년 9월 5일

발 의 자 : 이의영·이양섭·김학철·김인수·

박우양·황규철·김봉희 의원(7명)

## 1. 제안 이유

-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사랑하고 지원하기 위해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은 물론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인증 기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 내용

가.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(안 제1조, 안 제4조 ~ 안 제6조)

나. 예우 및 지원대상에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인증 기업 조문 신설(안 제4조, 안 제8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5.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 : 경제통상국 기업유치지원과와 협의

7. 입법예고사항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 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

## 충청북도조례 제 호

#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정의는” 을 “뜻은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도지사가 기업이나 기업인(이하 “우수기업인“이라 한다)을 예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‘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’ 을 수상한 우수기업인

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충청북도지사가 ‘품질경영대상’ 및 ‘품질경영우수기업’ 으로

지정한 우수기업인

4. 무역의 날이나 상공의 날에 정부로부터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
5.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‘충북우수중소기업인상’ 을 수상한 우수기업인

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충청북도지사가 ‘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인증 기업’ 으로 지정한 우수기업인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도지사는 기업인이 존경받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매년 10월 네번째 화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하고,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2년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제4조제1항제3호의 ‘품질경영대상’은 ‘품질경영우수기업’으로 지정된 기업 중 1개 업체로 하고, ‘품질경영우수기업’은 국제표준화기구(ISO)의 규격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5개 업체 이내

제8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제4조제1항제6호”를 “제4조제1항제7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4조제1항제6호의 ‘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인증기업’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채용한 기업중 도지사가 인정하는 20개업체 이내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사랑하고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제3조 (생략)</p> <p>제4조(예우 및 지원대상) ①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업이나 기업인(이하 "우수기업인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뜻은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예우 및 지원대상) ① 도지사나 기업이나 기업인(이하 “우수기업인”이라 한다)을 예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‘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’을 수상한 우수기업인</p>

현 행	개 정 안
<p>2. (생 략)</p> <p>3. <u>‘품질경영우수기업’으로 지정된 우수기업인</u></p> <p>4. <u>정부에서 무역의 날이나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</u></p> <p>5. <u>충북지방중소기업청 선정 충북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</u></p>	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충청북도지사가 ‘품질경영대상’ 및 ‘품질경영우수기업’으로 지정한 우수기업인</u></p> <p>4. <u>무역의 날이나 상공의 날에 정부로부터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</u></p> <p>5. <u>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‘충북우수중소기업인상’을 수상한 우수기업인</u></p>
<p>(신 설)</p>	<p>6. <u>충청북도지사가 ‘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인증 기업’으로 지정한 우수기업인</u></p>
<p>7. <u>기타</u> 신기술개발, 고용증대, 품질경영 향상, 노사협력 및 대규모 투자 등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우수기업인</p>	<p>7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② 기업인이 존경받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매년 10월 네번째 화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.</p>	<p>② 도지사는 기업인이 존경받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매년 10월 네번째 화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</p>
<p>③ ~ ④ (생략)</p>	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예우 및 지원) ① (생략)</p>	<p>제5조(예우 및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제1항 제2호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기간은 인 증 또는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.</p>	<p>②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기간은 인 증 또는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하고,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2년으로 한다.</p>
<p>제8조(선정 및 지정 등) ① (생략)</p>	<p>제8조(선정 및 지정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
<p>1. (생략)</p> <p>2. 제4조제1항제3호의 ‘품질경영우수기업’은 국제표준화기구(ISO)의 규격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5개 업체 이내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제4조제1항제3호의 ‘품질경영대상’은 ‘품질경영우수기업’으로 지정된 기업 중 1개업체로 하고, ‘품질경영우수기업’은 국제표준화기구(ISO)의 규격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5개 업체 이내</p>



현 행	개 정 안
<p>(신 설)</p> <p>4. <u>제4조제1항제6호</u>의 우수기업인에 해당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업인 5명 이내</p>	<p>3. <u>제4조제1항제6호</u>의 ‘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인증기업’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채용한 기업 중 도지사가 인정하는 20개업체 이내</p> <p>4. <u>제4조제1항제7호</u> ----- ----- -----</p>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# □ 노인복지법

제23조(노인사회참여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 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□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

제11조(고용과 소득보장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 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